자율기구 "도시정비기획준비단"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(이하 "통칙"이라 한다) 제29조의3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효율적 정비 등 현안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조직의 설치)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"도시정비기획준비단"을 둔다.
 - 1.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
 - 2.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
 - 3.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
 - 4. 국토교통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
 - ② "도시정비기획준비단"은 국토도시실장 밑에 두며,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하되, 그 밑에 "팀"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.
 - ③「통칙」제29조의3에 따라 "도시정비기획준비단"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 별·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"도시정비기획준비단"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,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, 1회만 연장할 수 있다.
- 제3조(기능) "도시정비기획준비단"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총괄·정책에 관한 사항
 - 2.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
 - 4.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제도개선 등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
 - 5.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거버넌스 등 협력에 관한 사항
 - 6.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
- 제4조(조직의 구성 등) ① "도시정비기획준비단"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단장은 "도시정비기획준비단"의 업무를 총괄하며, 국토교통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.
 -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「직무대리규정」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④ 직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.
 -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「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.

- 제5조(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)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정부 유관단체,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
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"도시정비기획준비단"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(파견자를 포함한다)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,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.
- 제6조(존속 기한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(2024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	도시정비기획준비단 공무원 정원표(제2조제3항 관련)	
총기		7
	일반직 계	7
	4급	
	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	1
	4급 또는 5급	
	과학기술서기관・서기관・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1
	5급	
	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3
	6급	
	시선주사 또는 해저주사	2